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따른 관할법원 정비 등〉

■ 전재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18호, 제1021호, 제1022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화 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11
3. 관계기관 의견	20

I. 제안경위

법률안	제안자	제안일	회부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2024. 6. 27.	2024. 6. 28.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사민사사건을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해사사건이 지방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해사전문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 증거보전 신청할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전문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신설, 제31조,

제35조의2, 제376조 및 제463조).

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선박 등에 대한 강제 집행 및 가압류 처분에 있어 관할 법원에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사집행법」 상 해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명칭에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73조, 제175조제1항, 제278조, 제295조제2항 및 제303조).

3.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소액사건 적용범위에 해사전문법원을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1조, 제2조제1항 및 제3조).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사전문법원의 설치에 따라 해사전문법원의 관할 등을 정하기 위한 것임.

구체적으로 각각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규정한 제40조의10제1항 각 호의 해사사건¹⁾을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

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016호)」

제40조의10(심판권) ① 해사전문법원은 다음의 해사사건을 심판한다.

1. 「상법」 제4편제2장제4절 및 제5편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민사사건(외국법이 준거법인 사건을 포함한다)
 2. 「선원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민사사건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건 외에 다음 각 목의 민사사건
 - 가. 선박의 도선 및 예선과 관련된 다툼
 - 나. 선박의 건조, 수리, 매매 등과 관련된 다툼
 - 다. 선박(건조 중인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물권과 관련된 다툼
 - 라.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과 관련된 다툼
 - 마. 선박의 항행 기타 관리 등을 위하여 공급된 물품 및 용역 등과 관련된 다툼
 - 바. 선박에 대한 보전처분, 강제집행 및 그에 부수하는 감수·보존처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툼
 - 사. 「해운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업분야에서의 다툼
 - 아. 「항만운송사업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업분야에서의 다툼
 - 자. 항만하역근로자 등 「항만운송사업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관련된 다툼
 - 차. 선박투자회사, 선박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의 운용, 이용 및 그 밖에 선박투자 업무에 관하여 발생한 다툼
 - 카. 마린나의 개발·관리·운영 및 해양레저 관련 분쟁
 - 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4. 다음 각 목에서 열거한 외국 중재 및 판결의 승인 및 집행신청사건
 - 가. 해사중재합의서 효력승인신청사건
 - 나. 외국해사중재판정서의 승인 및 집행신청사건
 - 다. 외국법원의 판결서의 승인 및 집행신청사건
 5.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전문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민사사건
- ② 해사전문법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한다.

할로 하면서(안 제24조의2), 해사사건 관련 청구에 관한 관련재판적(안 제24조의4), 해사사건 및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안 제35조의2)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증거보전의 관할법원 및 독촉절차의 관할법원에 해사전문법원을 각각 추가하는 것(안 제376조 및 안 제463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또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의 관할법원에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하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법의 적용범위에 해사전문법원의 관할 사건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임.

위 3건의 개정안은 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호)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호) 등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음.²⁾

-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해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해사전문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4.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전문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2) 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9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0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민사소송법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그 밖의 선박이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 채권(船舶債權),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해난구조(海難救助)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제된 곳 또는 구제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24조의2(해사사건의 관할)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 각 호의 사건은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신 설＞	제24조의3(지방법원과 해사전문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제28조는 사건이 지방법원과 해사전문법원 가운데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24조의4(해사사건 관련청구에 관한 관련 재판적) 하나의 소로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해사사건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에 관한 청구와 해사사건에 속하지 아니하는 청구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해사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해사전문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해사사건에 관한 청구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관련성이 있는 청구
2. 해사사건에 관한 청구의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법률상 해사사건에 관한 청구와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 당사자가 되는 공동소송 청구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를-----

-----.

제35조의2(해사사건 및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해사사건과 제24조의4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청구가 각각 해사전문법원과 지방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지방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그 관련청구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4조의4에 따른 관할 해사전문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① 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 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63조(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① -----

----지방법원 또는 해사전문법원----

② -----
-----지방법원 또는 해
사전문법원-----.

제463조(관할법원)-----
-----지방법
원 및 해사전문법원-----
-----지방법원 및 해사
전문법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 따라 해사전문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일 전날 해사전문법원이 아닌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 민사집행법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173조(관할법원)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u>지방법원</u> 으로 한다.	제173조(관할법원)----- ----- ----- <u>지방법원</u> 또는 <u>해사전문법원</u> -----
제175조(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 등의 인도명령) ①선박에 대한 집행의 신청전에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지 아니하면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선적(船籍)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u>지방법원</u> (선적이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선박국적증서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급박한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u>지방법원</u> 도 이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75조(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 등의 인도명령) ①----- ----- ----- ----- <u>지방법원 또는 해사전문법원</u> ----- ----- ----- ----- <u>지방법원 또는 해사전문법원</u>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8조(가압류법원)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u>지방법원</u> 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제278조(가압류법원)----- ----- <u>지방법원 또는 해사전문법원</u> (가압류할 물건이 <u>선박인 경우에 한정한다</u>)-----.
제295조(선박가압류집행) ① (생략)	제295조(선박가압류집행) ① (현행과 같

②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아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은 선박이 정박하여 있는 곳을 관할하는 <u>지방법원</u>이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한다. ③ (생략) 제303조(관할법원)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u>지방법원</u>이 관할한다.	음) ② ----- ----- ----- ----- -----<u>지방법원 또는 해사전문법원</u>----- -----. ③ (현행과 같음) 제303조(관할법원) ----- ----- -----<u>지방법원 또는 해사전문법원(다툼의 대상이 선박인 경우에 한정한다)</u>-----. 부 칙 <u>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u> <u>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 따라 해사전문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일 전날 해사전문법원이 아닌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u>
--	---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u>지방법원</u> 및 그 지원(支院)에서 소액(少額)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지방법원·해사전문법원</u> ----- ----- ----- -----.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법은 <u>지방법원</u>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 <u>지방법원·해사전문법원</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u>지방법원 본원(本院)</u>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	제3조(상고 및 재항고) ----- ---- <u>지방법원 본원(本院)·해사전문법원 합의부</u>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 따라 <u>해사전문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일 전날 해사전문법원이 아닌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u>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가.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관한 검토

해사사건은 복잡한 금융, 보험, 건조 산업과 다각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관할권이나 국제조약과도 관련이 있는 등 국제적 요소를 지니고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성이 있음³⁾.

현재 우리나라에는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에서 해사사건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전담 담당판사의 수가 적고 해당 자리가 순환보직인 관계로 해사사건을 처리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왔음.⁴⁾

우리나라는 조선업 세계 1위,⁵⁾ 선박 보유량 세계 5위⁶⁾ 등 해양강국으로서 지닌 국제적 위상에 비해, 해양이나 선박과 관련된 법률분쟁의 상당수를 외국 법원에 의존하고 있음.⁷⁾ 2021년 사법정책연구원이 작성한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해사사건 처리를 위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이 2,000억 원에서 5,000억 원 정도로 추

3) 사법정책연구원, 「해사쟁송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2019. 2. 27.

4) 허지연,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논의 및 부산지방법변호사회 해사법원추진특별위원회 활동」, 부산지방법변호사회, 2016.5.20.

5) 김민중, 「친환경·디지털 전략 통했다…K-조선, 中 제치고 3년만에 세계 1위」, 중앙일보, 2024.4.3.

6) 길소연, 「韓 해운업 부활 기지개…상선 보유량 세계 5위·주문량 3위」, 더구루, 2020.12.18.

7) 2019년 사법정책연구원이 작성한 「해사쟁송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해사사건은 본질적으로 국제적 성격을 가지며 움직이는 선박이 중심이 되므로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 분쟁에 대한 관할합의를 국내가 아닌 외국으로 하여 해결하는 경향이 있음.

산된다고 함.

지역 언론 및 법조계 등은 일부 지역에 고도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갖춘 국내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으며,⁸⁾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해사사건 분쟁해결에 대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해사법원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고 제22대 국회에서도 광규택의원이 이와 관련된 개정안을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현재 계류중임.

<제21대 국회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

대표발의 의원	의안번호	법률안	법원 설치 지역 및 관할	관할사건의 범위
윤상현	210008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이라 함)	인천 (전국, 2심까지)	해사민사, 해사행정, 해사민사 및 해사행정의 항소 및 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2100094	법원조직법		
	210009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이라 함)		
안병길	2100465	법원조직법	부산 (전국, 2심까지)	해사민사, 해사행정, 해사민사 및 해사행정의 항소 및 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2100466	해양사고심판법		
	2100467	법원설치법		
	2106509	민사소송법		
	2106510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소유자책임법”이라 함)		
	2106513	민사집행법		

8) 김선환, 「인천 해사전문법원 유치 총력전... 상황 어떨길래?」, TBS뉴스, 2024.4.12.

박선자, 「해사법원 부산 설치 촉구...“여야 협력 필요”」, KBS뉴스, 2023.7.14.

배준영	2106303	중재법	본원: 인천 (전국, 2심까지) 지원: 부산(경상), 광주(전라, 제주)	해사민사, 해사행정, 해사민사 및 해사행정 의 항소 및 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해 사법원의 권한에 속하 는 사건
	2106304	법원조직법		
	2106305	해양사고심판법		
	2106306	선박소유자책임법		
	2106308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 법(이하 “유류오염배상 법”이라 함)		
	2106309	법원설치법		
이수진	2108118	법원조직법	본원: 서울 (전국, 2심까지) 지원: 인천(인천, 충청), 부산(경상), 광주(전라, 제주)	해사민사, 해사행정, 해사민사 및 해사행정 의 항소 및 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해 사법원의 권한에 속하 는 사건, 국제상사사 건
	2108119	중재법		
	2108120	민사소송법		
	2108121	법원설치법		
	2108122	선박소유자책임법		
	2108133	해양사고심판법		
	2108134	유류오염배상법		

<제22대 국회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

대표발의 의원	의안번호	법률안	법원 설치지역 및 관할	관할사건의 범위
곽규택	2200448	법원조직법	부산 (전국, 2심까지)	해사민사, 해사행정, 해사 민사 및 해사행정의 항소 및 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2200450	해양사고심판법		
	2200452	법원설치법		
	2200453	민사소송법		
	2200454	민사집행법		
	2200455	선박소유자책임법		
전재수	2201016	법원조직법	부산 (전국, 1심)	상법에 따른 해상보험 및 해상편이 적용되거나 준용 되는 민사사건, 선원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민사 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해 사전문법원의 권한에 속하 는 민사사건 등
	2201017	유류오염배상법		
	2201018	소액사건심판법		
	2201019	선박소유자책임법		
	2201020	중재법		
	2201022	민사소송법		
	2201023	법원설치법		

각국은 해사사건의 관할 법원에 대하여 다르게 운영하고 있음. 영국 및 중국의 경우 해사전문법원을 두고 해사사건을 관할하고 있으며, 홍콩은 제1심 법원에 해상사건 전담판사를, 싱가포르의 제1심 법원에 해상 및 보험 전담 부서를 두고 있음. 반면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해사전문법원을 두지 않고, 미국은 연방지방법원에서, 일본은 일반 법원에서 해사사건을 처리하고 있음.

전문법원의 설치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재판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바, 최근 5년간 법원별 해사사건 전담재판부 본안 사건 수를 살펴보면, 평균 100건 내외의 사건이 접수 및 처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법원별 해사사건 전담재판부 본안 사건 수>

(단위 : 건)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합 계	105	115	94	85	101	109	96	97	123	97
서울고등법원	19	22	18	13	20	18	15	24	16	11
부산고등법원	3	4	8	3	8	11	3	5	7	4
서울중앙지방법원	18	31	21	14	31	30	38	28	39	39
부산지방법원	64	56	47	55	42	50	39	40	59	42

(자료 : 법원행정처)

주: 해사 사건의 의미와 정의가 다르고 해사사건에 대한 별도의 사건 부호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사건 수 확인은 어려우나,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해사해상사건 전담재판부의 본안사건 중 사무분담명에서 ‘해사’또는 ‘해상’을 포함하는 경우를 산출한 사건 수 통계는 표와 같음. 다만 이는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5개 법원에 접수된 해사·해상사건만을 파악한 것이고, 다른 법원을 통해서도 해사해상사건이 접수되기도 하므로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⁹⁾.

9) 2021년 사법정책연구원이 작성한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청구 원인을 기준으로 해사민사사건을 분류하는 경우, 전국 법원은 2019년 387건(합의사건 135건, 단독사건 210건, 소액사건 42건), 2020년 341건(합의사건 107건, 단독사건 190건, 소액사건 44건)의 1심 해사민사사건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파악됨. 위 판결건수를 평균하면 전국 법원은 연간 약 364건(합의사건 121건, 단독사건 200건, 소액사건 43건)의 1심 해사민사사건에 관한 판결을 선고한다고 추정할 수 있음.

개정안과 같이 국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할 경우 해사 관련 분야 법리에 정통한 법관이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다양한 해사분쟁 사건을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해사분쟁 해결을 위한 비용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향후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해상법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최근 5년간 해사사건 처리건수나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면 현재 운영 중인 해사사건 전담재판부의 전문인력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해사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나. 개정안별 검토

(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현행법은 선박, 항해 또는 해난구조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선적·선박이 있는 곳 또는 구제된 곳 등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특별재판적을 인정하고 있는데(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¹⁰⁾, 해사전문법원

2019년 전국 법원의 전체 민사사건 접수건수 대비 판결건수 비율은 61.1%임. 2019년 전국 법원의 사물관할별 민사사건 접수건수 대비 판결건수를 반영하면 우리 법원의 연간 1심 해사민사사건 접수건수는 약 591건(= 합의사건 186건 + 단독사건 335건 + 소액사건 70건)으로 추정할 수 있음

다만, 판결건수의 추출대상이 된 기간이 2년에 한정되어 있는 점, 판결문에 의해 청구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해사민사사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그러한 사건은 포함되지 않은 점, 해사민사사건의 구체적인 범위의 변동에 따라 사건 수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접수건수 및 항소건수는 사법연감의 통계를 활용한 추정적 수치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부분은 해사법원 설치 논의를 위한 참고 자료로만 보아야 할 것임.

설치에 따라 개정안은 해당 규정을 각각 삭제하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규정한 제40조의10제1항 각 호의 해사사건¹¹⁾에 대해서는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있음(안 제24조의2).

또한 개정안은 해사사건 관련청구에 관한 관련재판적에 관한 규정을 두고 하나의 소로 해사사건에 관한 청구와 해사사건에 속하지 않는 청구로서 관련청구(해사사건에 관한 청구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관련성이 있는 청구 등)를 하는 경우에는 해사전문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안 제24조의4), 해사사건과 관련청구가 각각 해사전문법원과 지방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지방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관련청구 소송을 해사전문법원에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35조의2).

뿐만 아니라 증거보전¹²⁾의 관할(안 제376조) 및 독촉절차¹³⁾의 관할(안 제463조)을 지방법원뿐만 아니라 해사전문법원에 중복적으로 부여하고 있음.

10)특별재판적에 의한 관할이 있을 때는 보통재판적에 의한 관할과 경합되며, 원고는 자기에겐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편의가 있음.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11) 각주 1 참고

12)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3) 민사소송법

제5편 독촉절차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는 해사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함에 따라 해사전문법원의 관할을 정하고 그 역할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해사사건에 대한 전속관할권을 갖는 해사전문법원이 특정 지역(부산)에만 설치되므로 법원 접근성 및 소송 당사자의 편의¹⁴⁾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현행법은 제2편 제2장에서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2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제3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4절)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며, 이는 전속관할임¹⁵⁾.

14)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 수행 등이 가능하다고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서류제출 등에 국한되며 「민사소송법」상 변론, 증인신문 등을 위해 소송당사자, 소송대리인, 증인 등 소송관계인은 법원 출석이 필요함.

제134조(변론의 필요성) ①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단서 및 이하 항 생략)

제148조(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②·③ (생략)

15) 민사집행법

제21조(재판적) 이 법에 정한 재판적(裁判籍)은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또한 보전처분 중 가압류¹⁶⁾의 경우에는 관할법원이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되고, 가처분¹⁷⁾의 경우에는 관할법원이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됨¹⁸⁾¹⁹⁾.

그런데 개정안은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의 대상이 선박인 경우에는 관할을 지방법원뿐만 아니라 해사전문법원에 중복적으로 부여하고 있음.

이는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의 목적물이 선박인 경우 해사전문법원도 관할법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법원인 해사전문법원의 역량을 활용하고 그 역할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러나, 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해사전문법원이 특정 지역(부산)에만 설치되므로 선박이 다른 지역(인천 등)에 있는 경우 지리적 접근성 등의

16)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17)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18)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은 특히 신속을 요하므로 가압류·가처분 명령을 한 법원이 집행법원이 됨(제293조제2항, 제296조제2항, 제301조). 선박의 경우에는 가압류집행 방식에 따라 가압류집행법원 관할의 차이가 있음(제295조).

19)이에 따르면 본안이 해사사건인 경우 보전처분의 관할법원은 가압류할 물건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해사전문법원이 관할법원이 됨.

측면에서 강제집행절차와 관련된 자²⁰⁾의 편의가 오히려 저하되는 측면이 있으며,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사건의 신속한 처리의 필요성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현행법은 지방법원 및 지원의 관할사건 중 소액사건²¹⁾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해사전문법원의 관할사건 중 소액사건에 대해서도 동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해사전문법원의 관할사건 중 소액사건도 동법에 따른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²²⁾

(4) 종합적 검토

위에서 검토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 일부개

20) 예를 들면 채권자가 인천에 있는 채무자 소유의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천지방법원이 아니라 부산에 있는 해사전문법원에 신청하여 그 절차가 해사전문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 현황 조사 등은 인천에서, 매각절차 진행은 부산에서 하므로 매각절차에 참여하려는 자 등의 편의가 오히려 저하될 수 있음.

참고 규정; 민사집행법

제176조(압류선박의 정박) ①법원은 집행절차를 행하는 동안 선박이 압류 당시의 장소에 계속 머무르도록 명하여야 한다. ⇒ 경매목적물인 선박의 확보와 운행에 따른 침몰, 손상 방지 등 취지 제107조(매각장소) 매각기일은 법원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른 장소에서 매각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

21)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22)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支院)에서 소액(少額)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법률안」 및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해사사건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갖춘 해사전문법원의 설치에 따라 해사전문법원의 관할을 정함과 아울러 해사전문법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임. 특히 해사사건의 수가 충분하지 않아 해사전문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대함으로써 해사전문법원의 안정적인 운영도 고려한 취지로 이해됨.

다만, 해사전문법원의 설치지역 및 관할, 관할 해사사건의 범위 등 구체적 설치형태 등을 정함에 있어, 해사전문법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한 관할 집중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법원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 문제에 따른 소송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 등의 편의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사법원 설치와 관련하여 광규택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들이 우리위원회에 현재 계류중이므로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관계기관 의견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임. 다만, 해사전문법원의 구체적 설치형태를 고려함에 있어 전문법원의 체계적 전문화 및 법관의 전문성 역량 확보를 위한 사건관할 집중의 필요성과 소송 당사자들의 소송 편의와 법원 접근성 문

제를 균형감 있게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구체적으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서는 해사법원에 해사 보전처분·해사강제집행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 법원에 대한 접근성과 이에 따른 소송당사자의 소송 편의 및 보전처분·강제집행사건의 신속한 처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나, 전자소송이 활성화됨에 따라 법원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가 소송당사자의 소송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고 있고, 해사사건의 수가 충분하지 않아 해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보하지 않으면 해사법원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061